

「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2. 29(화)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1. 27(수)
- 상정일자 : 2016. 02. 01(월) 제21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 정성문)

-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('11년)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 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자부 주관으로 축조된 자치법규 기본안에 대한 강원도 시군담당자 합동작업 수행 결과를 토대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지연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3조는 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
  - 안 제4조는 자동차 신고업무 특례

- 안 제5조는 서류송달의 방법
-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7조는 체납처분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명시하였음.

○ 본 조례안 검토 결과

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 
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었으며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 
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평창군 군세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평창군 군세(이하 "군세"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법 시행령(제5조에서 "영"이라 한다),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3조(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위임받은 강원도 도세(이하 "도세"라 한다)와 군세의 부과·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·독촉장·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,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·면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4조(자동차세 신고업무의 특례) ①군수는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의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그 외에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「지방세법」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의 관할 구역 외에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

다. 다만,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한 때에도 송부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·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마다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영 제11조에 따라 군수는 읍·면장 및 이·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, 이·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교부금전의 예탁)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, 납세자, 그 밖의 사람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, 납세자 등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.

제7조(체납처분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)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"성실납부자"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세 차례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법인·개인을 말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.